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2 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/ 보험정책급여팀장 고영옥 [6581]/ 팀원 이승아 [6572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4161호
시행일자 2026. 7. 3.
수 신 수신처 참조
참 조
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(2026. 6. 22. ~ 6. 30.)

1.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 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
2. 이에, 2026년 6월 22일 ~ 6월 30일까지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 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목 및 주요내용
1	2026.06.23.	제2026-128호	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 ○세부내용 게시물 참고
2	2026.06.24.	제2026-129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○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○시행일: 2026.7.1.
3	2026.06.24.	제2026-130호	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○세부내용 게시물 참고 ○시행일: 2026.7.1.
4	2026.06.24.	제2026-131호	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고시(제2026-131호) 안내 ○세부내용 게시물 참고
5	2026.06.25.	제2026-132호	「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」 일부개정 ○ 제10조제2항 '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' 개정(별표 3, 4) 등
6	2026.06.25.	제2026-133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 ○'Baricitinib 경구제(품명: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)'의 급여기준 확대 등 ○시행일: 2026.7.1.
7	2026.06.29.	제2026-134~137호	도수치료 관련 고시 개정사항 안내 **(*산하단체 별도 공문 안내)** ○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○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고시 ○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고시 ○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고시 ○시행일: 2026.7.1.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목 및 주요내용
8	2026.06.29.	제2026-138호	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일부개정 ○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에 따른 기존 관리번호 부여 규정 삭제 등 ○시행일: 2026.7.1.
9	2026.06.30.	근로복지공단 안내사항	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도수치료(관리-1)관련 산재보험 업무처리 방법 안내 **(*산하단체 별도 공문 안내,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변경사항도 함께 안내함)** ○도수치료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사항 안내
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https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